이 보도자료는 2024. 8. 1.(목)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최현철

전화 02-3219-4420/팩스 02-3219-2397

보도자료 2024. 8. 1.(목)

#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판매하여 800억원대 편취한 '존버킴' 구속기소 및 범죄수익인 슈퍼카 13대 압수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코인왕', '존버킴' 으로 불리는 코인 전문 시세조종업자 A를 수사하여 **애초부터 코인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상장**시킨 후 **시세조종 등의 수법** 으로 **피해자 약 18,000명으로부터 809억원(실제 취득한 이익 216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 **A(구속)**와 **공범 1명(불구속)**을 오늘(8. 1.) **사기죄 등**으로 **기소** 하였음(다른 공범 1명은 4. 5. 구속기소)
  - \* 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
- 포도코인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슈퍼카 사진을 SNS에 버젓이 게시하며 재력을 과시하던 A의 실체와 코인 사기범행 전모를 규명함
- A는 전속 시세조종팀, 리딩방팀을 만들어 이를 직접 운영하면서 코인 발행부터 상장 및 시세조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범행 全 과정을 총괄 함으로써 범죄수익 분배와 관련된 세력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독식하는 등 범죄수괴로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
- 특히, A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A가 시골 창고에 은닉한 '부가티 디보', '페라리 라페라리' 등 13대의 하이퍼카·슈퍼카(합계 약 205억원)를 압수하고, 슈퍼카 해외매각대금인 43억원 상당의 예금채권도 몰수보전하였음
- 앞으로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음

# 1

### 사건 개요

### 가. 피고인

	피고인	지위 및 역할	처분
1	A(42세, 구속)	포도코인 사기 범행 총책(수괴)	8. 1. 구속 기소
2	B(40세, 구속)	포도코인 발행업체 甲, 개발업체 乙 대표 (스캠코인 발행・상장・허위 홍보 등)	4. 5. 구속 기소
3	C(38세, 불구속)	포도코인 발행·개발업체 동업자 (스캠코인 발행・상장・허위 홍보 등)	8. 1. 불구속 기소

### 나. 공소사실 요지

### ● [피고인 A·B·C]

- '21. 2.~'22. 4. 포도코인과 연계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코인 판매대금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상장한 뒤 허위의 홍보자료 유포,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후 포도코인 10 억개 전량을 매도하여 809억원(실제 취득한 이익 216억원\*) 편취 [사기]
  - \* 코인 매도금액(809억원)에서 시세조종 과정에 코인을 재매입한 금액을 제한 금액
- '21. 2.~'22. 4. 위 216억원 상당의 포도코인 매도대금(BTC)을 사업계획대로 코인 발행업체인 피해자 甲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 [피고인 B·C]

- '21. 8. 포도코인 개발업체 乙이 포도코인 사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여건을 갖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丙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 유지심사를 통과하는 등 위계로써 丙 거래소 직원의 상장유지심사 업무를 방해 **[업무방해**]

### 다. 수사 경과

- '23. 6. ~ '24. 1. A 인지 및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 '24. 3. B 인지 및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 '24. 4. 4. C 인지 및 주거지 압수수색
- '24. 4. 5. B 구속 기소

- '24. 6. 14. A가 은닉한 **부가티 디보 등 총 13대의 하이퍼카·슈퍼카 압수**
- '24. 6. 28. A의 예금 43억원(슈퍼카 해외매각대금) 몰수보전
- '24. 7. 17. A 구속
- '24. 7. 22. 압수한 슈퍼카 중 5대 몰수보전청구 인용 및 집행
  - ※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도 보전조치 진행 중(7. 24. 몰수보전청구)
- '24. 8. 1. A 구속 기소, C 불구속 기소

# 2 수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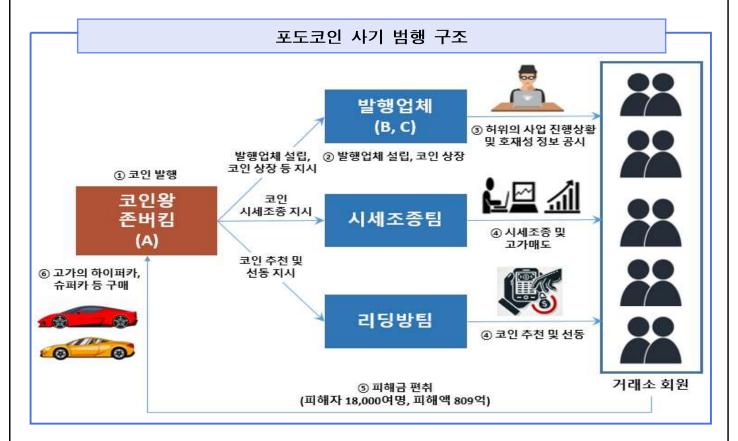
-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합수단')은 법적 규제 미비로 인해 코인 업계에 만연한 스캠코인 사기범행을 수사하던 중 다수의 스캠코인 사기범행 관련자들로부터 코인 시세조종 행위로 거액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존버킴(A)'의 존재와 그가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코인을 확인함
- A가 관여한 코인 중 포도코인의 경우, A가 발행부터 상장, 시세조종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여하고, 발행된 포도코인 전량을 처분하여 거액의 범죄수익을 거둬들인 정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범죄수익환수에 총력을 기울임

# 3 수사 결과

### 가. 이 사건 사기 범행 구조

- A는 지인 등으로 자신에게 전속된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구성한 후 이를 직접 운영하면서, 포도코인의 발행·상장은 물론, 전속 시세조종팀, 리딩방팀 을 이용하여 포도코인의 자전거래, 통정매매, 리딩방 운영 등에 의한 시세 조종 및 코인 처분을 주도하고 그 범죄수익을 독식함
- B, C는 A의 지시 하에 **발행업체**(甲), 개**발업체**(乙)를 설립하고, 거래소에 **허위 내용의 백서 제공**, 인터넷 매체를 통한 **허위의 홍보자료 유포** 등의역할을 담당하고, 본인 및 지인들의 거래소 계정을 시세조종 계정으로 제공함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후 '21. 2.~3.(포도코인 발행물량의 55% 매도) 및 '22. 3.~4.(포도코인 발행물량의 45% 매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약 18,000명으로부터 합계 809억원(실제취득한 이익 216억원)을 편취하였음



### 나. 포도코인 사건에서 확인된 특징적 사실

- 코인왕으로 불리는 A의 실체 확인
  - SNS,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하이퍼카 및 슈퍼카 사진·영상을 게시하며 코인사업에 의해 축적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유명해진 코인왕 A가 정상적인 코인사업이 아니라 전속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운영하면서 스캠코인 사기 범행을 주도한 범죄수괴이고, 하이퍼카·슈퍼카는 범죄수익의 결과물임을 밝혀냄
- 시세조종팀, 리딩방팀 등 분업화된 조직 구성·운영 확인
  - A는 고급 호텔 및 레지던스에 시세조종을 위한 컴퓨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그곳에 분산 상주시킨 후, 자신의 지시 하에 각자역할을 분담케 하는 방식으로 포도코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 허울뿐인 법인을 설립하고 마치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 형 성
  - 포도코인은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여 12명의 능력 있는 개발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처럼 홍보하였으나, **포도코인 개발업체 乙**은 대표 B와 직원 1명으로만 구성되어 **개발 능력이 전무**하였고, **포도코인 매도대금도** 사업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사실 확인
- 전속 시세조종팀·리딩방팀을 운용하여 세력 간 분쟁 방지 및 범죄수익 독식
  - A는 자신에게 전속된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만든 후 이를 운용하여 스캔 코인 사기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수행함으로써, 범죄수익 분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력 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독식함

# 4 범죄수익 환수 조치

### 가. 총 13대의 하이퍼카・슈퍼카(추정가 합계 205억원) 등 압수

● A의 범죄혐의 수사와 함께 범죄수익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가 범죄수익으로 매입한 하이퍼카, 슈퍼카 여러 대를 외딴 시골 창고에 은닉해두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4. 6. 14. '부가티 디보'(추정가 73억원), '페라리 라페라리'(추정가 46억원) 등 하이퍼카・슈퍼카 13대와 오토바이 1대를 압수하였음



- 압수 차량 중 A 명의의 차량 5대에 대해 몰수보전명령을 받아 처분금지 조치하였고, A가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리스계약을 체결한 차량들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청구하여 보전조치 진행 중임
  - ※ 상세한 압수 차량 내역은 별지 [압수 차량 목록 및 사진] 참조

### 나. 슈퍼카 해외매각대금 약 43억원의 예금채권 몰수보전

● A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자동차 수출업체를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슈퍼카를 해외로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매각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자동차 수출업체 명의의 계좌 정보를 확보하여 43억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도 몰수보전명령을 받아 처분금지 조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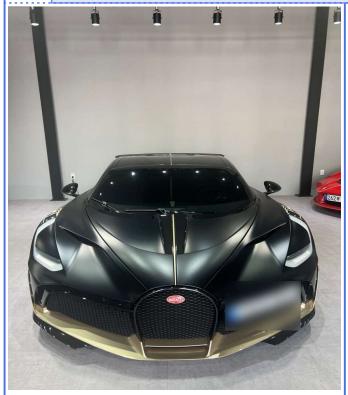
# 5 향후 계획

-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여 박탈할 예정임
- 앞으로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범죄 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 하겠음 □	

### 별지 [압수 차량 목록 및 사진]

### 압수 차량 목록 및 사진



① 부가티 디보(추정가: 73억원)



② 페라리 라페라리 아페르타(추정가: 46억원)



③ 롤스로이스 팬텀(추정가: 7억원)



④ 포르쉐 918 스파이더(추정가: 12억원)



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로드스터 (추정가: 7억원)



⑥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추정가: 6억원)



⑦ 맥라렌 675LT 쿠페(추정가: 5억원)



- 9 -



⑨ 포르쉐 카레라 GT(추정가: 9억원)



① 포르쉐 카레라 GT(추정가: 9억원) \*총 2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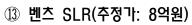


① 맥라렌 세나(추정가: 12억원)



① 페라리 F8 트리뷰토(추정가: 4억원)







④ 베스파 디올 에디션(추정가: 3,000만원)